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757

발의연월일: 2020. 9. 10.

발 의 자:한정애·안호영·김상희

윤미향 · 양이원영 · 고용진

박홍근 • 야전(비) • 장철민

임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그간 댐 정책은 홍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신규 댐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국가 주도 댐 건설 정책의 결과로 대부분의 주요 유역들은 이 ·치수의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한편 최근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안전 사고 우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기 건설된 댐의 대부분은 준공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유입량 감소 등으로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아울러, 24년만에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정책효과 달성 및 지속가

능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대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여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안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2).
 - 1) 현행 「댐건설법」제3조에 따른 댐, 「전원개발촉진법」제4조에 따른 발전용 댐 및 총저수용량 5백만㎡이상이면서 하천시설간 연계운영 대상에 해당하는 댐을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으로 정함.

- 2) 댐관리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 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함.
- 3) 댐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총괄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기 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하여 제출한 댐 관 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
- 4)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 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수립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함.
- 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 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댐관리"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 1.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
- 2.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발전용 댐
- 3.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로서 총저수용량 5백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면서「하천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하천시설간 연계운영 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용 댐

제2장제1절의 제목 중 "건설"을 "관리 등"으로 한다.

제15조 앞의 "제2절 댐의 관리"를 삭제하고, 제4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0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및 제9조의2로 하며, 제4조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 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 (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댐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침
- 2. 댐시설의 관리 계획
- 3. 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물환경보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물 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 계획
- 4.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댐에 한정한다)
-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해당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①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 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변경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전단 중 "제15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종전의 제18조의3)제1항 중 "댐건설장기계획"을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건설의 적정성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을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 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7조)제1항제12호 중 "제9조제1항에"를 "제13조제1항에"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9조)제1항 전단 중 "제7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7조제4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전단 중 "제7조제1항제12호"를 "제11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13조의2(종전의 제9조의2)제1항 중 "제9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제7조제4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2조)제4항 중 "제9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3조)제3항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9조 앞의 "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를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제7조제4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제7조제1항제2호"를 "제1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조제2항"을 "제5조

제49조 중 "제18조"를 "제8조"로 한다.

제2항"으로 한다.

제51조 중 "제10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3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8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1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20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 및 제20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하고, 같은 조 제6호가목 및 제5조제3항제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로 한다.

⑦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카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전단 및 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사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3조"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 1항"으로 한다.

⑤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단서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b)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제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한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⑩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8항 및 제27조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행 개 정 아 혅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댐관리"란 이 법의 적용을 <신 설>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목 제3조(적용범위) (1)적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 용수 · 공업용수 또는 환경개 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 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다만, 제4조는 모 --. <단서 <u>든 댐에 적</u>용한다. 삭제> 1. ~ 4. (생략)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 2.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 현 행 | 개 정 안 |
|--------------------|---------------------|
| |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
| | 의 심의를 거친 발전용 댐 |
| | 3.「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
| | 따른 저수지로서 총저수용량 5 |
| | 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이면서 |
| | 「하천법」제14조제4항에 따라 |
| | 하천시설간 연계운영 대상에 |
| | 해당하는 농업용 댐 |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 제1절 댐의 <u>건설</u> | 제1절 댐의 <u>관리 등</u> |
| <u><신 설></u> |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① 환경부 |
| | 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 |
| | 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 |
| |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 |
| | 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 |
| |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
| | <u>다.</u> |
| | 1. 댐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침 |
| | 2. 댐시설의 관리 계획 |
| | 3. 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물 |
| | 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 |
| | 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 |
| | 다) 보전 계획 |
| | 4.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제3조 |
| |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댐에 |

| 현 행 | 개 정 안 |
|-----|---------------------|
| | 한정한다) |
| |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
| |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u>사항</u> |
| | ② 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 |
| | 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
| |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
| | 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
| | 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 |
| | 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 |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 |
| | 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관리에 |
| |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
| | 경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댐 |
| |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 및 제3조제2항 각 호 |
| | 의 댐을 관리하는 자(해당 댐의 |
| |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 |
| | 다)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 | •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
| |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
| |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
| |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
| | 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 |
| | 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 |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한 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
| |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 | 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
|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
| | 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 |
| | 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 |
| | 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
| |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 |
| | <u>다.</u>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
| | 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수립ㆍ |
| |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
| | <u>령령으로 정한다.</u> |
| <u><신 설></u> |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① |
| |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 |
| | 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 |
| | 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 |
| | 시행계획(이하"세부시행계획"이 |

| 현 행 | 개 정 안 |
|-----|--------------------|
| |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을 관 |
| | 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 |
| |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
| |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 |
| | 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 |
| | 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
| |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
| | 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 <u>니하다.</u> |
| | ③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
| |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 |
| | 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
| |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 |
| | 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중앙 |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환경 |
| | 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 |
| |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 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 |
| | 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
| | 을 공개하여야 한다. |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 |

행 혂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① 환 경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 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 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댐건설의 기본방침 2. 각종 용수의 수급(需給) 전망 3. 수계별 댐건설계획(농업용 수댐은 저수량이 1천만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재원조달계획 5. 입지선정기준 6.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

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

아

개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건
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댐건설 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

혅 했 개 정 아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 소관별로 댐건설에 관한 장 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 하여야 한다. 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 려는 경우에는 댐건설의 적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반영 결과----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 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 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 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 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④ (현행 제4조제5항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

-----제4항에 따

른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토의 방법・절차,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행 안 혅 개 정 운영 등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 ⑦ <삭 제> 른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수 렴 후 제1항에 따라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에는 관할 시 · 도지사의 의 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 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댐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제외한 다. <u>⑧</u> <삭_ 제> ⑧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장기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 다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댐건 설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 다. 9 <삭 제> ⑨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 현 행 | 개 정 안 |
|--------------------------|----------------------|
|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 |
|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 |
|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준 | |
| 용하지 아니한다. | |
| ⑩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 | <u>⑩ <삭 제></u> |
| 9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 | |
|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 |
|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 |
| 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 | |
|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제7조(기본계획) ① 댐을 건설 | <u>제11조</u> (기본계획) ① |
| 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 | |
|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 |
|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 | |
|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 |
|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 | |
| 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 | |
| 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 |
| 경우에만 포함한다. | ,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 12. <u>제9조제1항에</u> 따라 개발 | 12. <u>제13조제1항에</u> |
|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 |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 |
| 및 면적(제41조제4항에 따 | |
| 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 내로 | |
| 한정한다) | . |
| 13. (생 략) | 13.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u>제8조</u> (실시계획) (생 략) | 제12조(실시계획) (현행 제8조와 같 |
| | <u>수</u>) |
| <u>제9조</u> (다른 법률에 따른 인· |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
| 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 | 가등의 의제) ① |
| 관이나 시·도지사가 <u>제7조</u> | <u>제11</u> |
| <u>제1항</u> , 제2항 및 제5항에 따 | 조제1항 |
| 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 | |
| 거나 승인한 때에는 같은 조 | |
|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 | |
| 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 | |
| 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 |
| 지정된 것으로 보며, <u>제7조</u> | 제11조 |
|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 | 제4항 |
| 시된 때에는 개발촉진지구 | |
|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 |
|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에 관 | |
| 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 | |
|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 |
| 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 | |
| 하는 바에 따른다. | |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 | 2 |
| 사가 <u>제8조제1항</u> , 제2항 및 | <u>제12조제1항</u> |
|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 | |
| 립•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 | |
| 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 | |
| ·해제·협의·승인·인가· | |
| 지정 등(이하 "인·허가등" | |
| 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 |
|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 |
|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 |
|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의 | |
|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 |
| 본다. | <u>.</u> |
| 1. ~ 16. (생 략) | 1. ~ 16. (현행과 같음) |
|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 | ③ |
| 사는 제7조제1항제12호에 관 | <u>제11조제1항제12호</u> - |
|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 | |
| 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 |
| 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 | |
| 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 | |
| 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 |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 |
|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 |
|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 | |
| 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 | |
|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 | |
| 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 | |
| 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 | |
| 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 | |
| 루어진 것으로 본다. | |
| <u>제9조의2</u> (인·허가등 의제를 | 제13조의2(인·허가등 의제를 위 |
| 위한 일괄협의회) ① 환경부 | 한 일괄협의회) ① |
|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u>제9</u> | <u>利13</u> |
| <u>조제3항</u> 에 따라 관계 행정기 | 조제3항 |
| 관의 장과 인·허가등 의제 | |
| 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 |
|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 |
| 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 | |
| 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 |
| 수 있다. | . |
|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 ② <u>제13조제3항</u> |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 | |
| 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 | |
| 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 |
| <u>제10조</u> (토지의 출입 등) (생 | <u>제14조</u> (토지의 출입 등) (현행 제1 |
| 략) | 0조와 같음)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 <u>제15조</u>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① |
| ① (생 략) |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 ② |
|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 | 제11조제4항 |
| 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 | |
|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 |
|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 | |
| 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 |
|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 |
|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 | |
| 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 |
|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 | |
| 는 사업기간에 하여야 한다.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u>제12조</u> (댐건설 완료의 고시) | <u>제16조</u> (댐건설 완료의 고시) |
| ① ~ ③ (생 략) |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 4 |
| 고시가 있은 때에는 <u>제9조제</u> | 제13조 |
| <u>2항</u> 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 | 제2항 |
| 가등에 따른 해당 공사 또는 | |
| 사업의 준공검사, 준공인가와 | |
|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 |
| 본다. | |
| <u>제12조의2</u> (댐건설 완료의 고시 | 제16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
| 저 댄의 사용) (새 랸) | 대의 사용) (혀해 제12조의2와 간은) |

혂 행 개 정 아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제1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현행과 같음) ① • ② (생략) 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 게 귀속되거나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은 댐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해당 관리 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제12조에 따른 -----제16조----댐건설 완료 고시가 있은 날 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 지를 등기할 때에는 제8조에 -----제12조--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12 -----제16조 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 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하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국유・공유 재산의 처 제18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분) (생략)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2절 댐의 관리 <삭 제>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제1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 (현행 제15조와 같음) 자) (생략)

| 현 행 | 게 정 안 |
|----------------------------|----------------------|
| 제1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생 |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현행 |
| 략) | 제16조와 같음) |
| <u>제17조</u> (댐관리규정) ① 댐관리 | <u>제7조</u> (댐관리규정) ① |
| 청은 <u>제16조</u> 에 따른 댐관리 | <u>제6조</u> |
| 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 | |
|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 |
|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
| ② <u>제15조제2항</u> 에 따라 댐의 | ② 제5조제2항 |
|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 |
|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 |
|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 | |
| 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 | |
| 우에도 또한 같다. |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 제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현 |
| (생 략) | 행 제18조와 같음) |
| 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 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현 |
| 사업) (생 략) | 행 제18조의2와 같음) |
| <u>제18조의3(</u> 댐의 평가) ① 환경 | <u>제9조의2</u> (댐의 평가) |
| 부장관은 댐의 활용도를 높 | |
| 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 |
| 관리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으 | |
| 로 하여금 댐의 용수 공급능 | |
| 력, 홍수 조절능력 등을 주 | |
| 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 |

쳙 행 개 정 아 -「물관리기본법」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 제27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에 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활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관한 특례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제16조제<u>1항</u>-----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 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 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 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 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 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 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 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 정 · 부과할 수 있다.

| 현 행 | 개 정 안 |
|-------------------------|----------------------|
| ②・③ (생 략) | ②·③ (개정안과 같음) |
|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① |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① ~ ③ |
| ~ ③ (생 략) | (현행과 같음) |
| ④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 ④ <u>제16조</u> |
|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를 하 | |
| 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 |
|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 | |
|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 |
| 한다. |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
| 등) ① ~ ④ (생 략) |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 | ⑤ |
| 라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나 | |
|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 |
| 는 <u>제7조제4항</u> 에 따라 고시 | - <u>제11</u> 조제4항 |
| 된 기본계획 중 저수의 용도 | |
| 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 | |
|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① |
| ① (생 략) | (현행과 같음)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 | ② |
| 라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 | |
| 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
| 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 |

| 현 행 | 게 정 안 |
|---------------------------|----------------------|
|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u>제7조제1항제2호</u> 부터 제4 | 2. <u>제11조제1항제2호</u> |
| 호까지의 사항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 제45조(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① |
|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 |
|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 | |
| 우에는 「하천법」과 「골재 | |
| 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 | |
| 시행지와 <u>제12조제1항</u> 및 제 | 제16조제1항 |
| 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 | |
| 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 |
| 등을 한다. 다만, 시·도지사 | |
|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하는 | |
|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 |
| 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다 | |
| 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 |
| <u>제15조제2항</u> 에 따라 댐의 관 | <u>제5조제2항</u> |
| 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 |
|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9조(벌칙) <u>제18조</u> 를 위반하 | 제49조(벌칙) <u>제8조</u> |
| 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 | |
| 거나 치수(治水)에 장해를 | |
|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 | |
| 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 |
| 다. | . |
| 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 제51조(벌칙) |
| 자로서 <u>제10조제3항</u> 부터 제5 | 제14조제3항 |
|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 |
| 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 | |
| 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 |
|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 |
|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
| 처한다. | |
| 제5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 | 제53조(과태료) ① |
| 유 없이 <u>제10</u> 조제1항에 따른 | 제14조제1항 |
|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 |
|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 | |
| 태료를 부과한다.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